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지난 7월 1일부터 사업장이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얻은 이익의 최고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가 많다.

◇불법배출시설 과징금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도 생긴 이익의 2~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오염물질 제거·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7월1일)

◇불법배출시설 철거제

불법배출 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불법배출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집행 한다.(7월1일)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에 클로로포름, 보론 등 2개 항목이 추가되고 노후수도관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함.(7월 1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조정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이 20%에서 7.5%로 인하되는 대신 형평성을 고려해 청량음료 요율은 종전 5%에서 7.5%로 높여진다.(7월1일)

◇먹는 샘물 수질부담금 납부표지제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슬병처럼 병뚜껑에 납부증명 표시를 의무화.(7월1일)

◇재활용 신고면제

사업장 폐기물인 폐지, 고철, 폐용기류에 대해 재활용 신고를 면제함(7월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발족

종전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 조합으로 운영해온 수도권 매립지를 관리를 환경부 산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발족,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7월 22일)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 또는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행정계획이나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내 염색폐수 정화기술 특허 취득

**폴리비닐알코올·COD 각 98.6%·82% 제거
유지비용 저렴**

장마철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공단 염색폐수를 80% 이상 정화할 수 있는 폐수처리기술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국립환경연구원(원장 류재근) 수질공학과 연구팀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폐수처리시스템을 도입, 염색폐수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제거효율을 82%까지 높일 수 있는 폐수처리기술을 개발, 특허를 취득했다고 지난 7월 10일 밝혔다.

전국의 염색폐수 발생업소는 1,574개소로 전체 폐수배출업소의 4%를 차지하지만 폐수방류량은 하루 55만 2,000m³로 전체 폐수방류량의 21%를 차지한다. 특히 염색폐수에는 독성물질을 비롯 염료와 합성세제 등 분해가 잘되지 않는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과 생물학적 처리방법의 복합처리기술로도 처리효율이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고온에 내성이 있는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혐기성 처리와 일반적인 호기성처리를 통해 COD 309m³/l 원수를 57m³/l 까지 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염색폐수중 난분해성 오염물질인 폴리비닐알코올(조여제)과 색도의 제거율도 각각 98.6%와 72.9%를 기록, 기존의 기술보다 각각 17.1%P, 23.8%P 향상된 처리 효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수질공학과 임연택 과장은 "신기술은 생물학적 처리방법만을 이용하기 폐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처리방법에 비해 운전비용 등 유지관리비 적게 든다"며 "약품도 사용하지 않아 슬러지의 발생량도 적고 약품사용에 따른 2

차오염의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폐수 재이용업체 배출부과금 경감

환경부는 폐수 재이용업체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경감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지난 6월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 업무보고를 통해 물질약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현재 하천 등에 그대로 방류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 중 하수도법을 개정,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값싸게 양질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빗물을 생활 용수로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이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존오염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연료 품질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 2002년부터 공급하고 자동차 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오존원인 물질 50%, 매연 60%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오존이나 도시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해 수도권지역의 주요배출 시설에 방지시설 설치를 연내 완료하고 부산·대구·광양만 등에는 2002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한 난개발 등으로 국토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토를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를 작성중이며 완료되면 국토개발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준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환경부, 한국제지와 첫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제지(주)가 환경부의 첫 자발적협약(VA) 대상업체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울산 울주군 소재 한국제지가 최근 제출한 대

기오염물질 저감계획서를 정밀검토한 결과 충분히 실현 가능성 있는 것으로 판단돼 자발적협약 대상업체 1호로 선정했다고 지난 6월 22일 밝혔다.

한국제지는 대기오염 개선목표, 방지시설 설치계획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평균 81점(협약체결기준 60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도입된 자발적협약이란 기업이 스스로 대기오염 물질 저감대책을 마련, 이행할 경우 정부가 연료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황합량 0.5% 이하의 연료만 사용해 온 한국제지는 배연탈황 시설을 설치하는 오는 10월 말까지는 황합량 0.5~1.0%의 연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제지는 연료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연간 약 1억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자발적 협약 업체들에 대해 연료규제 완화 조치 및 홍보대행은 물론 장관 표창도 수여할 방침이다.

환경부, 정화조 제조업체 절반 성능검사 불합격 판정

정화조 등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의 절반이 성능검사에 불합격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 133개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의 정화조에 대해 정밀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49.6%인 66개 업체의 제품이 턱없이 낮은 처리효율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불합격된 업체들은 내년 2월 9일까지 재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제품 제조,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오수처리시설은 그동안 1년에 5일간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인 검사를 받아왔으나 법개정 후 겨울 등 6개월 동안 환경관리공단의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됐다.

한편 성능검사에 합격한 업체 중 전남 담양의 (주)장호와

경기도 양평의 (주)대현산업은 처리수질(기준치 20ppm이하)이 각각 3.2ppm, 4.7ppm으로 양호했다.

배출부과금 체납액 갈수록 증가

배출부과금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염배출업소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체납액이 99년 말 현재 수질분야 288억9천500만원, 대기분야 69억3천100만원 등 총 358억2천600만원으로 집계돼 전체징수 결정액 617억3천500만원의 5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97년 징수결정액 519억8천700만원 중 223억1천800만원이 체납돼 체납률 42.9%, 98년 670억9천100만원 중 323억9천200만원으로 48.3%와 비교할 때 크게 높아진 것이다.

도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출부과금 자체가 결손으로 처리된 불납결손액은 97년 10억1천500만원에서 98년 3억8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가 99년 5억4천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새로 발생한 체납액은 14억6천9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천800만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체납업소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라 배출부과금 징수가 쉽지 않다"면서 "배출부과금 납부 독려와 함께 배출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수도 요금 체납엔 증가산금 부과

앞으로 하수도 요금을 체납하면 가산금 외에 증가산금을 내야하고 하수처리장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시장·군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일선 지자체가 예산 등을 핑계로 하수처리장 설치를 기피할 수 없도록 환경부장관에게 '하수처리장 설치 명령권'이 부여되고 하수처리수는 반드시 재이용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골자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7월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현재 5% 가산금만 물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이 넘긴 날부터 매달 1.2%씩 최고 60개월간 증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하수처리장 설치와 적정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시장·군수 등 지자체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설치된 처리장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거나 처리장에 들어온 하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환경부는 또 물절약을 위해 모든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중수도시설 등을 설치, 반드시 재이용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성능이 떨어지는 하수자재의 사용을 막기 위해 하수도용 자재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북경 환경산업기술박람회 오는 9월 11일~14일 개최

(주)전일실업은 세계적인 전문 전시사 독일하노버 박람회 주식회사 Deutsche Messe AG, Hannove의 한국 대표부로 독일 하노버박람회(주)의 주최하에 오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북경에서 중국환경산업기술박람회(ITEP China 2000)를 개최한다. 중국 북경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리는 동행사에는 정보 및 측정관측기술, 환경정보 시스템, 측정 및 관측시스템, 공해물질 처리시설 및 재활용(리사이클링)기술, 수질오염 방지기술 대기오염 관측 제어기술, 환경산업용 부품, 환경보호에너지 기술, 기타

제반 서비스 등이며 자세한 문의는
<http://www.hfchina.com>, (02)579-9831.

국민환경의식 '경제보다 환경이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발전보다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500명과 환경전문가 164명을 상대로 조사, 지난 6월 22일 발표한 '21세기 국민환경의식'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9.9%가 경제발전에 비해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보전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로 나타났으며 특히 응답자의 90.6%가 문화적 혜택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수질오염(97.4%)과 대기오염(97.1%)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생활쓰레기 처리(95.4%), 산업폐기물 및 유독성화학물질처리(94.6%), 생태계파괴(93.7%)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노력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응답자의 57.8%로 긍정적 평가(42.2%)에 비해 높았으며 정부발표 환경오염 지표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68.5%를 차지,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의 환경문제 해결노력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1.5%나 차지해 부정적 시각이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 배출 992곳 적발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지난 5월 한달 동안 전국의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925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0.7%인 992개소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40.7%인 404개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141개 업소는 폐쇄명령, 96개소는 사용중지 명령을 각각 받았다.

위반 내역별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379개소(38.2%), 무허가 236개소(23.8%), 방지시설비정상 가동 80개소(8.1%), 기타 297개소(29.9%) 등이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금속산화물 업체인 한국티타늄공업은 황산 제2철 용액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26.46㎥를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유출시키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고발·조처됐다.

또 경기도 안산시 팔곡2동 신동방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동아타이어공업 온산공장은 각각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돼 사용중지 및 고발됐다.

대기오염 줄이기 심포지엄 개최

중앙일보와 환경정의시민연대는 대기오염 저감 및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심포지엄을 오는 10월까지 네차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구온난화와 대도시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캠페인으로 추진된다.

네차례 심포지엄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화해의 시대, 남북에너지협력사업의 과제와 전망 (6월)
2. 자동차 공해에 의한 대기오염과 시민건강(8월)
3. 한국, 신재생에너지는 가능한가(9월)
4. 시민이 바라보는 기후변화 협약과 대응방안(10월)

장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이며, 한국가스공사와 환경부, 산업자원부가 후원한다.

정부 소각시설 광역화 본격 추진

정부는 시·군·구별로 단독 소각장 설치를 지양하는 대신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역 소각장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광역 소각시설이 단독시설에 비해 설치비가 크게 절감되는 데다 입지를 둘러싼 지역주민반발(납비)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에도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7월 4일 환경부의 광역소각 시설 설치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인천, 청라, 대전 대덕 등 7개 광역 소각 시설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단독시설에 비해 총 47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청라소각장(하루 500톤 규모)의 경우 중구, 동구, 서구 등 3개 지역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할 계획인데 98년부터 2001년까지 769억원이 투입 예정이나 3개 단독 시설 설치비(922억원)보다 153억원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기 파주에 215억원을 들여 내년 완공예정인 소각장(100톤)도 파주와 김포에 따로 건설하면 237억원이 소요되나 광역시설을 설치, 22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환경부는 내년부터 2~3년 사이에 모두 7개의 광역소각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한창 진행중인데

- ▲구리(공동시용 지역 구리, 남양주)
- ▲청주(청주, 청원군)
- ▲제주 산복(제주시, 남·북제주군 일부)
- ▲제주 산남(서귀포시, 남북제주군 일부)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남부(남구, 남동구)와 전주(전주, 김제, 완주) 등 두 곳에도 광역소각시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신규시설도 광역시설로 설치, 단독시설에 비해 사

업비를 270억원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공장소음에 의한 어류피해 첫 배상결정

공장소음으로 인해 양식장의 물고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면 공장사업주는 마땅히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 이모(73)씨가 인근에 위치한 전기부품 제작업체 D공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D공업을 이씨에게 508만2천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7월 9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장소음에 의한 어류피해를 공식 인정한 첫 사례다.

이씨는 D공업이 지난 94년 12월부터 소형변압기와 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하면서 막대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람에 자신의 양어장 메기 4만여마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며 총 3천23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현지조사 및 관련문헌 검토결과 메기는 4년 이상 자라면 60cm이상 되는 것이 정상이나 이씨의 양식 메기는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9~40cm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면서 메기가 60~70dB의 소음에도 민감한 만큼 65dB에 달하는 공장소음으로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이씨가 양식장 규모에 비해 메기를 1만마리(전체의 33%) 정도 과다 양식해온 데다 적정량의 사료를 투입하지 않는 등 관리를 다소 소홀히 해 전체 피해액 중 15%만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이씨의 정신적인 피해주장에 대해서는 공장주변의 소음과 악취가 사람이 견딜수 있는 범위(소음 70dB, 악취 3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최초로 광역상수원 15개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

전국 주요 광역상수원 상류 15개지역이 6월 29일부터 전국 최초로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오수처리 대책지역내 오수처리시설이 설치안된 기존 숙박·음식점은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의 50%는 국고에서,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 팔당특별대책지역(5개 지역) : 경기도 남양주·용인·이천시, 광주·여주군
- 대청특별대책지역(2개 지역) : 충청북도 보은·옥천군
- 수변구역(2개 지역) : 경기도 여주군, 충청북도 충주시
- 광역상수원지역(6개 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 전라남도 순천시, 화순·장흥·담양군

오수처리대책지역 지정제도는 작년 8월9일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숙박·음식점 등 오수를 발생하는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어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지역중 상수원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기존의 숙박·음식점에 대하여 오수처리 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같이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없던 기존의 숙박·음식점에 대하여 새로이 의무를 부과하게 된 것은 이들 업소가 상대적으로 청정한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만큼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팔당호, 대청호, 주암호, 옥정호 등 주요 광역상수원 상류지역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은 모두 708개소이며, 이들 기존 숙박, 음식점들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마철 수질오염 업소 무더기 적발

환경부는 장마철을 맞아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상수원 수질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6.19부터 30일까지 10일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유역

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업소에 대한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상수원 주변지역의 폐수다량배출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등 상수원오염시설 3,517 개업소를 집중단속하여 7.7%인 270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141개업소를 사직 당국에 고발하였으며, 채취한 1,311건의 시료는 시료분석기관에서 분석중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유형을 보면 축협중앙회전주사업소, 노승빌라, 아리랑관광, (주)우성정밀 등 41개소가 오·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었으며, 대북농장, 에치에스월드 등 40개소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되었고, 태광산업 (주)제2공장, 대화전선(주) 등 61개소가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하거나 부적정 처리하다 적발되었다. 신세계리조트개발, 경상대학교기숙사, 화진금봉타운, 림호파크장여관 등 40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주)한국야쿠르트, 풍산산업(주), 강산기사식당, 대청민물집 등 88개소가 기타 불법건축물 축조·방지사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다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인·환경사범에 대하여는 4대강 환경감시대 등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적발된 모든 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개선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문제업소는 카드화하여 위반사항이 완전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매립지가스 자원회면 연간 200억 절감효과

수도권매립지(6백27만 평)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자원화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연간 최고 2백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전력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등 4개 용역업체에 의뢰해 수도권매립

지 가스자원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난 7월 11일 밝혔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등 전체 가스의 최대 발생량은 하루평균 1백30만입방미터로 이 가운데 80만입방미터를 오는 2040년까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80만입방미터의 가스를 자원화 하면 시간당 50입방미터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1만7천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당 54.9-70.15원의 요금을 받을 경우 연간 1백80억-2백여원의 전력판매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 총 6백86억5천만원 규모의 수도권매립지 가스처리시설(시간당 발전용량50MW) 건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는 물론 대기환경을 해치는 메탄가스 방출량을 대폭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지시설 교체기간 중 배출부과금 부과여부

◇질의

현재 가동중인 방지시설이 낙후돼 교체하고자 하는데, 공정 특성상 배출시설은 가동을 중단할 수 없어 공사기간 중 방지시설없이 배출시설만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도 배출부과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또 부담해야 한다면 부과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부과금 산정방법은.

◇회신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며,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라도 배출시설이 가동되고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초과 부과금 부과대상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해 자체 개선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관할 행

정기관에서 현지 조사)필요시 오염도 검사)해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팔당호 주변 첫 오염총량제

경기도 광주군과 양평군이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등 한강 수계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팔당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군은 지난 7월 9일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천 오염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이달까지 파악하기 위해 용역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해 2002년부터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군도 2003년부터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달 용역조사를 의뢰했다. 오염총량은 자치단체별로 앞으로 5년 동안의 지역개발 계획과 인구 자연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증가량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원받게 되며, 축산시설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의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환경부는 1998년 한강 수계 수질개선 대책의 하나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서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려 했으나 지역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지자체들이 반발, 지자체별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낙동강 지역에서도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으며 영산강·금강 수계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염총량제

특정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강수계법에 국내 최초로 도입됐으며 시장, 군수가 오염발생량 연차적 삭감계획 등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실

시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전북에 10개 하수처리장 건설

환경부는 전북부안을 비롯한 전북지역 10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북 군산과 부안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병행, 건설키로 했다.

지난 7월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전북부안을 비롯 김제, 군산개정, 군산대야, 익산황등 등 10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오는 2002년까지 건설키로 하고 빠르면 연내에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들 10개 지역의 하수 처리장건설에는 국고와 지방비 등을 합쳐 모두 1천415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부안에 6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루 처리 능력 1만7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오는 2002년까지 건설키로 했다.

또한 김제시와 만경읍에 3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루 처리능력 3만4천톤과 800톤의 종말처리장을 각 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산대야 및 개정면에 130억원을 들여 3천 500톤 규모의 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한편 익산황등과 금마면에도 135억원을 들여 2천700톤과 1천8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오는 2002년까지 각각 건설키로 했다.

아울러 완주군 소양면과 상관, 구이면 등 3개 지역에도 모두 117억원을 들여 종말처리장 각각 건설, 하루에 2천 550톤 정도의 하수를 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군산과 부안에는 162억원을 들여 하루에 200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물이용부담금 1당 110원으로 인상 확정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이 내년 1월부터 현행 t당 80원에서 110원으로 30원(37.5%) 인상된다.

물이용부담금 인상은 수도요금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김명자 환경부장관)는 지난 7월 14일 오후 환경부 6층 회의실에서 서울, 충북, 강원 등 5개 시·도 대표와 수자원공사, 한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오는 2003년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을 t당 130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물이용부담금 인상은 한강수질 개선작업 및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주민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구입한 수변구역 사유지에 생태 공원을 조성하거나 한강에 인공수초섬을 설치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함께 수변구역 이외의 땅이라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설업체와 협의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 인천 앞바다 수질개선 사업 비용 등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물이용부담금 인상으로 가구당 월평균 추가부담액은 현행 1천600원에서 2천200원으로 600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달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시 환경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영향 평가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 본법 시행령이 해당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8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사전환경영향평가 조항이 없어 난개발이 극성을 부려왔다"면서 "개정안이 발효되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을 수 있어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

라고 말했다.

다음은 사전협의 대상 개발사업. ()안은 협의시기

▶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사업인·허가 또는 승인전)
- 농림지역내 사업면적 7500㎡이상(〃)
- 준농림지역내 사업면적 1만㎡이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지역

- 개발제한구역내 사업 면적 5000㎡이상(사업허가전)

▶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적용 지역

- 생태계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사업시행전 또는 인·허가전)
- 임시 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 생태계보전지역내 사업 면적 5000㎡이상(사업인가 또는 허가전)
- 자연유보지역내 사업 면적 5000㎡이상(〃)
- 완충지역내 사업면적 7500㎡이상(〃)
- 조수보호구역내 사업 면적 5000㎡이상(〃)

▶ 산림법 적용지역

- 보전임지중 공익임지 사업면적 1만㎡이상(사업인·허가 또는 승인전)
- 공익임지의 산림내 사업면적 5만㎡이상(〃)

▶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자연보존지구내 사업 면적 5000㎡이상(사업허가전)
- 자연환경지구내 사업 면적 7500㎡이상(〃)

▶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 습지보호지역내 사업 면적 5000㎡이상(사업승인 또는

협의전)

- 습지구변관리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
- 습지개선지역내 사업 면적 7500㎡이상(〃)

▶ 수도법·하천법·소하천장비법·지하수법

- 광역상수도 설치지역으로부터 상류 1km이내인 지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600㎡이상 (단 팔당 상수원의 경우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은 제외·사업허가전)
- 하천구역내 사업면적 7500㎡이상(〃)
- 소하천구역내 사업면 적 5000㎡이상(〃)
- 지하수보전구역내 사업면적 5000㎡이상(〃)

수질오염 방지사업비 상황조정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수질오염방지사업 비율을 현행 24.5%(1000분의 245)에 30%(1000분의 300)로 상황 조정된다.

행정자치부(www.mogaha.go.kr)는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현행 도로정 비사업에 배분되는 잉여금 특정사업 재원의 배분비중 5.5%(1000분의 55)를 내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별로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농어촌특별세액의 150분의 19에서 150분의 23으로 수질오염방지사업 배정비율을 높힐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내에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들어갔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국회에 제출·의결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여금 대상사업에 지원이 필요한 광역시의 구도 및 시군의 읍 면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청소년육성 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도 포함하고 있다. ◀